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3. 22 선고 2022가단12585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4. 11. 26 선고 2023나59066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3. 22 선고 2022가단125852 판결

전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이동영

피고B

변론 종결 2023. 2. 1.

판결 선고 2023. 3. 22.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19. 8. 22.부터 2020. 2. 20.경 사이에 16회에 걸쳐 별지 목록 기재 일시에 별지 목록 기재 금액을 증여한 해당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 C에게 15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를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면서, 8,0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2019. 1. 1., 나머지 7,0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2019. 7. 1.로, 이자는 2018. 8. 15.부터 위 각 변제기까지 연 15%, 지연손해금은 연 24%로 약정하고, 2018. 7. 18.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8년 증서 제400호로 그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C은 2019. 8. 22.부터 2020. 2. 20.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명의인 E 계좌에서 배우자인 피고의 계좌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일시에 각 금액을 16회에 걸쳐 송금(이하 이를 '이 사건 각 입금행위'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원고가 C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C의 무자력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입금행위로 인하여 C은 무자력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가) C의 적극재산

이 사건 각 입금행위 당시 C은 김포시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2019. 9.경부터 2020. 2. 20.경까지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3억 2,000만 원 내지 3억 3,000만 원 사이인 사실, C이 2011. 9. 20.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H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는 189,600,000원(채권최고액은 227,520,000원)인 사실, 이 사건 각 입금행위가 처음 이루어진 2019. 8. 22.경 C의 E 계좌 잔고는 28,625,827원, H은행 계좌의 잔고는 2,112,548원(= 2,011,445원2) + 100,103원3), 기업은행 잔고는 4,091원4), I은행 잔고는 125,730원(= 37,086원5) + 88,644원6), J은행 계좌는 276,801원, K은행 계좌는 8,808원(= 3,600원7) + 5,208원8)) 합계 31,153,805원인 사실, 이 사건 각 입금행위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2020. 2. 20.경 E 계좌의 잔고는 10,507,828원, H은행 잔고는 2,111,923원(= 2,011,796원9) + 100,127원10), 기업은행 잔고는 299,100원(= 4,092원11) + 295,008원12), I은행 잔고는 125,742원(= 37,098원13) + 88,644원14), J은행 계좌는 290,226원, L은행 계좌는 1,851,649원, K은행 계좌는 8,809원(= 3,600원15) + 5,209원16) 합계 15,195,277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의 최저 실거래가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165,000,000원에서 위 H은행 대출금 채무 전액 189,600,000원을 공제하면 23,600,000원을 초과하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은 2019. 8. 22. 기준 178,480,308원(= 80,000,000원 + 16,859,177원 + 70,000,000원 + 11,621,131원), 2020. 2. 20. 기준 196,381,246원(= 80,000,000원 + 26,406,017원 + 70,000,000원 + 19,975,229원)이 되는바, C의 예금 채권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입금행위 당시 C는 채무초과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C의 사해행위 C와 피고의 관계, 입금한 돈이 약 6개월 동안 150,0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C와 피고 사이에 다른 금전거래 관계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의 이 사건 각 입금행위는 C의 잔존 적극재산 대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C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이 사건 각 입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피고와 C 사이에 2019. 8. 22.부터 2020. 2. 20.경까지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일시에 각 금액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가 금전 증여인 경우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을 구하나,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가액배상금의 지급의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지체 책임을 지게 되는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에서 명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윤아영

별지

1) 제소기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입금행위는 2019. 8. 22.부터 2020. 2. 20.경까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소가 2022. 9. 7. 제기되었으며, 갑 제2호증의 거래내역 조회일은 2021. 4. 20.이기는 하나, 원고가 C 소유의 아파트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것은 2022. 6. 10.이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개의 압류 및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증거신청을 통하여 C의 구체적인 재산에 관하여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C이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2)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3)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4) (계좌번호 3 생략) 계좌

5) (계좌번호 4 생략) 계좌

6) (계좌번호 5 생략) 계좌

7) (계좌번호 6 생략) 계좌

8) (계좌번호 7 생략) 계좌

9)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10)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11) (계좌번호 3 생략) 계좌